경북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경북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1]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12.>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추첨/선착순 등)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신설 2023.6.12.>

③ 사용 신청자가 교육기관 관련 단체일 경우 다른 단체에 우선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6.12.>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4조(사용제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일부개정2023.6.12.>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 이상)인 민원 발생 시<신설2023.6.12.>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신설 2023.6.12.>

1.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 강사를 초빙하여,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 목적의 강습을 단발적,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신설 2023.6.12.>
2.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는 경우<신설 2023.6.12.>

제5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신설 2023.6.12.>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신설 2023.6.12.>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와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일부개정 2023.6.12.>

②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6.12.>

1. 전액면제<신설 2023.6.12.>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 직접사용<신설 2023.6.12.>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6.12.>
2. 100분의 50 감액<신설 2023.6.1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신설 2023.6.12.>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신설 2023.6.12.>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신설 2023.6.12.>
   라. 읍·면지역의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신설 2023.6.12.>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3.6.12.>
3.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6.12.>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3.6.12.>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6.12.>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일부개정 2023.6.12.>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23.6.12.>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일부개정 2023.6.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일부개정 2023.6.12.>

[별표 1]

경북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기 타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경북중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운동장 (인조잔디)	- 평일: 17:00 ~ 21: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09:00 ~ 19:00	교육활동시간 제외
체육관	- 평일: 17:00 ~ 21: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09:00 ~ 19:00	교육활동시간 제외
일반교실, 특별교실	- 평일: 17:00 ~ 21:00 - 일요일·공휴일: 09:00 ~ 19:00 - 토요일: 미개방(무인경비)	교육활동시간 제외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경북중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경북중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023-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북중학교 시설 사용 규칙」 및 「경북중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경북중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업(단체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수익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 ② 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붙임 2]

<경북중학교 시설 이용 수칙>

경북중학교 시설 이용자는 아래의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는 경북중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정해진 양식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을 납부한다.
3.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4. 경북중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①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 학습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④ 학교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⑥ 사용목적을 변경하였을 경우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⑧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6. 세부 수칙
   ① 승인된 시설만을 이용한다.
   ② 지정된 주차장만 이용한다.
   ③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반드시 모두 되가져 간다.
   ④ 화단 등의 무단출입을 금한다.
   ⑤ 화재예방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교내에서의 화기사용 및 취사행위를 금한다.
   ⑥ 마이크, 앰프, 노래방 기기 등 소음을 발생하는 기구의 사용은 금한다.
   ⑦ 학교관리를 위탁받은 당직기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운동장에 자전거, 자동차 등의 출입을 금한다.
   ⑨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이상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차후의 이용을 금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자 합니다.

사 용 일 :

사 용 단 체 : **사용자대표 :** **(인)**

[붙임 3]

경북중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1. 허가번호 :
2. 사용 대상
   - ○ 성명(대표자명) :
   - ○ 직업(단 체 명) :
   - ○ 신 청 자 :
3. 사용허가 내용

시 설 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시간	
사용 인원	
사 용 료	
사용료 납부기한	
납부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본교의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하며, 사용료의 납부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북중학교 시설 사용 규칙」 및 「경북중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확인하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년 월 일

경북중학교장 (직인)

[붙임 4]

경북중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경북중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한다.

[붙임 5]

경북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목록

접수 번호	신청기관	신청자	신청일	사용일	사용료(원)	사용장소	비고
2023-1	00축구회	홍길동	2023.3.2.	2023.3.1.-5.31.	000,000원	운동장	
2023-2	00면	가나다	2023.4.17.	2023.5.20.-5.21.	면제	운동장	